

자료1

개정화물유통촉진법 주요내용 (종물업 관련)

(법률 제7384호, 2005. 1. 27)

제5장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제39조(종합물류업자의 인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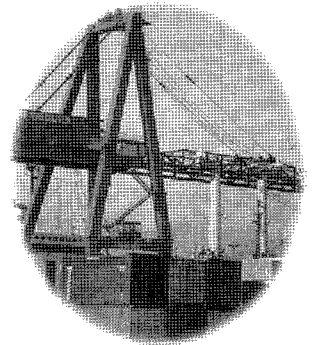
- ① 물류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자의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주무부장관이 2 이상인 경우의 인증신청서 제출기관 등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제40조(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인증종합물류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 시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효율적인 물류업무 처리를 위한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물류업무의 자동화 및 물류장비의 표준화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에 물류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7〉



화물유통족진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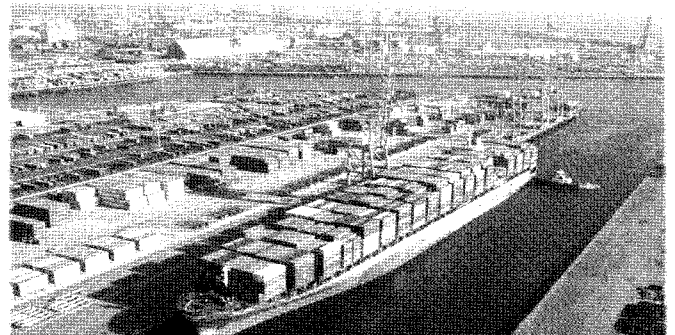
제15조의4(물류사업의 종류) :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범위

〈별표 4〉 물류사업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화물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일반/용달/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철도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 화물 운송업, 내항 화물 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 항공운송업, 부정기 항공운송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일반창고업, 냉장·냉동창고업, 농산물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 창고업(공동물류센터 운영업 등)
	화물터미널 운영업	복합화물터미널, 일반화물터미널, 해상화물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하역업 포함)	육상/항공/수상 화물취급업 * 취급업: 하역업, 포장업, 단순가공·조립·상표부착·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의 부가가치물류업
	화물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등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상/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물류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제공 등
	물류컨설팅업	물류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등

제15조의5(물류관련시설) :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시설」

1.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공항시설중 공항구역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센터 및 동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지 2 권 1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

해 당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 관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권 고 | 제도05-2-2
번 호

- ◎ 수출입물류 분야의 물류서비스 주체간에 리베이트가 수수되며, 하역장소에서 화물의 자가운송을 제한하고, 운송관리비를 차별적으로 징수하며,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하역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을 화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역회사 소속의 항운노조원이 수행하여 해당 작업요금을 하역회사 등이 분배하는 등 부패가 빈발하고 있음.
- ◎ 따라서, 수출입물류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 ▶ 실제 물류비 지출내역의 투명 공개
 - ▶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 ▶ 하역장소, 보세창고에서의 불법·불합리한 관행개선
 - ▶ 해외 물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차단
 - ▶ 리베이트 수수사태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수출입물류분야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약관심사 및 지도·감독 등)
 - 물류서비스 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규약심사 및 승인)
 -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타사 자가운송 차량의 진입제한 및 운송관리비 추가징수의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 조사 및 처벌

[재정경제부]

- (1)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 「기업물류비산정에관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물류비 계산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 (2)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관세사법 반영 등 재정부 조치와 별도로, 하역·보관 등 수출입 물류 일괄서비스에 필요한 주선활동을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추진)
- (3)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에 대한 주기적 단속 실시
 - 물류과정의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주기적 단속실시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추진
 - 자본금 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리베이트 수수사태 포상신고제 도입 검토
 - 수출입물류 기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금지 교육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강화

[산업자원부]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 수출입물류비의 기준설정 및 수출입물류비 실태 등 주기적 조사·발표

[해양수산부]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하역장소에서의 화물운송 제한 및 운송 관리비 징수 개선
 - 하역회사 등록요건 등에 화물운송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지침마련 및 관리·감독 등 조치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 개선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비를 인가요금인 하역요금에서 제외 및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 조치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관 세 청]

(1) 리베이트 국외유출 방지

- 물류과정에서 수수하는 리베이트를 해외로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성 저해, 리베이트 거래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 발생
- 영세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으로 물류과정의 투명성 확보곤란 및 리베이트 거래 성행
- 물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단계별,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미

■ 개선방안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에 대한 주기적 단속 실시(건교부, 2005년 상반기)
 -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실시
 - 물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실시
 - 집중단속에 앞서 일정기간 전에 단속기간을 예고하는·사전예고제·운영
 - 〈 정부합동단속반 구성 〉
 - 주관 : 총리실, 간사: 건교부
 - 구성 : 총리실, 공정위·건교부·해수부·관세청·국세청 및 해당 지자체 등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추진 및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자본금 상향 조정
 - : 법인 3억 ⇒ 5억원, 개인 6억원 ⇒ 10억원
 - 등록자격 제한 추가
 - :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 리베이트 수수사태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건설교통부, 2005년)
 - 기업윤리 준법프로그램 강화
 - 수출입업체, 물류관련 기업 및 관련단체들이 리베이트수수를 배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도록 적극 권장
 - 윤리강령에는 리베이트 수수시 계약해지, 물류업체의 공개경쟁을 통한 채택 등이 포함
 - 기업의 모범적인 우수사태를 발굴하여 소개(사례: 모나미 등)
 - 관련단체별 소관부처 주관 교육계획 수립·시행(2005년 상반기)
- (복합운송주선업협회: 건설교통부, 항만물류협회·선주협회: 해양수산부, 관세사회·관세협회: 관세청)

대 책 방 안

1. 물류주체의 불법행위 제재강화

■ 현 황

- 무등록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영업으로 물류과정의 투명

2. 외국 포워더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근절

■ 현황

- 국내 포워더사는 화물유치를 위해 외국 포워딩업체에게 CBM당 16~20\$을 지급
- 또한 국내 창고업체들도 직접 외국 포워딩업체를 상대로 영업

■ 문제점

- 정상적인 화물유치 활동이 아닌 국내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외화가 불법 유출되는 상황초래

■ 개선방안

- 불법 외환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처벌(관세청, 2005년 상반기)
- 포워더, 보세창고 등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폐업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건교부, 관세청, 2005년 상반기)
- 관련업계의 자정내용을 자율공정규약에 반영(건교부, 관세청, 2005년 상반기)

3.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현황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 법적 역할 : 운송주선기능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해 주는 전통적인 화물의 운송주선기능 수행

- 실제 역할 : 운송주선기능 + 운송주체로서의 기능 + 화주의 물류대행 기능

운송주체로서의 기능 : 컨테이너 등의 운송설비를 갖추고 화물의 집화, 분배, 혼재 등의 업무를 수행
물류업무 대행기능 수행: 포장업자, 육상운송업자, 통관업자, 하역업자, 철도운송업자, 해운업자 등 각 업자와 계약체결, 해외의 복합운송주선업자와 업무제휴 계약체결, 운송업무의 전문적인 조언, 운송수단의 수배,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관련서류의 작성, 화주의 통관주선 기능 수행, 운임, 수수료와 기타 혼재 비용의 결제, 포장 및 창고보관, 보험의 부보, 화물의 집화, 분배, 서비스, 관리 및 인도 서비스 등을 수행

※물류업무 수행과정(운송, 보관, 통관 등)에서

문제발생시 화주에 대해서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전적인 책임을 짐

• 수출입업체의 복합운송주선업체 이용 실태

- 대다수의 수출입업체(특히 영세 수출입업체)는 제조, 판매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형태로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기능상의 문제점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상 규정된 「화물의 운송주선기능」 이외에 「운송주체로서의 기능」과 「화주의 물류업무 대행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상거래에서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복합운송업체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정보와 밀수, 불법 무기류 등 안보위해 물품 반입, 마약밀수 등에 관련된 화주의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여 세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 수출신고, 정정 등의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관행정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근거도 미약함(관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만 있음)

• 리베이트 수수 실태

- 수출입물류 과정에서 서비스 주체간 거래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음

• 리베이트 거래 발생원인

- 화주가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영세한 화주를 대신하여 포워더가 모든 수출입 물류거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 관세사, 창고업체 등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대신해주는 데 대한 대가(영업비)로 지급한다고 여기기 때문

• 리베이트 수수의 문제점

-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하여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수수하는 리베이트는 세금계산서가 수반되지 않는 음성적 소득으로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조세탈루의 직접적 원인이 됨
- 리베이트 수수는 부도덕한 기업주의 불법 음성자금 조성으로 활용됨



■ 개선방안

〈개선필요성〉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상 운송주선 기능만 부여(대행비용을 화주로부터 취득)하고 있으나, 실제 운송주선 이외에 화주의 물류업무 대행 및 선사, 하역회사, 보관업체, 통관업체(관세사) 등에 대한 화물 주선기능 수행
- 이 과정에서 주선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리베이트」 형태로 받고 있음
 - 무역업체는 전국적으로 약10만개(수출입 업체는 약4만여개)가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로서 물류업무 수행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일괄하여 위탁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운송·보관·하역 등)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위 등 개정 추진(건교부, 2005년)
- ⇒ 현행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단순한 「운송주선」 기능에 화주와 물류서비스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특화된 물류서비스(보관, 하역 등)의 「주선기능」을 부여

※ 물류서비스 주체(복합운송주선업체 포함)가 화주의 물류대행기능, 운송기능, 물류서비스의 중개·주선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동북아시아위원회에서 종합물류업으로 추진 중(관련법률 국회통과)

- 통관업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를 위하여 단순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선수수료는 화주로부터 직접 수수하도록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개선(재경부, 2005년 상반기)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시행(정부합동 단속반, 2005년 상반기)
 - 통관을 제외한 기타 물류위탁 과정은 현행법상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금융거래 조사 등 강력한 단속 및 처벌
-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재경부, 2005년)

